

한·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분류번호	723.1JA
등록번호	1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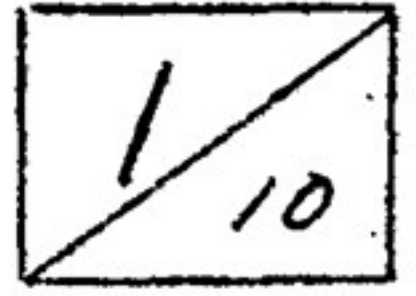
한. 일회담 청구권관계자료,

1965-66

회계부서	723.1 JA
회계명	1473 .

분류번호	723.13A 청1965-66	등록번호	1473	보존기간	
기능명칭	한·일회담 . 청구권 관계자료, 1965-66				
생산과	동북아수과	생산년도	1966		
<p>내용: 1. 청구권 자금 1차년도 사용계획서, 1965. 2. 피탈선박 보상청구문제, 1965. 3. 한국출신 전범자 단체 '同進會'의 국가배상현황, 1965-66 4. 기타.</p>					
		M/F No.			

1. 청구권자금 1차년도 사용계획서, 1965



請求權資金/次年度使用計劃

65. 12. 10.

문서로 재분류 (66. 12. 31)

1966. 12. 31. 이 시점에
의거 일관문서로 재분류됨

經濟企副院



一 請求權資金을 早期(6年内)에 使用하여야 할 經濟的 必要性

우리나라 政府는 第1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이

1966년에 終了됨에 따라 現在 第2次 5個年計劃을 立案中에 있다

來後年(1967年)을 第1次年度로 하는 第2次 5個年計劃의 主要目標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達成하기 위하여는 莫大한 内外資를 所要로 한다

1. 第2次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主要目標

가. 計劃期間中 年平均 7%의 經濟成長을 達成

나. 目標年度에 7億弗(商品 및 用役) 輸出達成

成과 輸入代替의 積極推進

다. 食糧自給과 水産業의 積極振興

라. 機械化學 鐵鋼工業의 重典的 推進

마. 에너지 資源의 綜合的 開發

II ~~기밀~~
CONFIDENTIAL

바. 雇傭增大를 위한 勞動集約的 産業의 育成
사. 中小企業 및 農村工業 等の 輸出産業에의
振換

아. 科學技術의 振興으로 人的資源 開發
投資財源의 調達計劃은 다음表와 같다

III ~~기밀~~
CONFIDENTIAL

2. 投資外財源調達(第2次經濟開發5個年計劃暫定案)

(1966年價格)

(單位: 10億圓 / 百萬圓)

	1967	1968	1969	1970	1971	計劃期間中合計	
						金額	%
(1) 國民總生產	876.04	937.36	1,002.98	1,073.19	1,148.31	-	-
(2) 總投資	150.43	166.29	183.66	199.45	217.72	917.55	100.0
(3) 國內貯蓄	77.36	88.16	106.74	128.03	150.81	551.10	60.1
(1) 民間	50.50	54.87	61.70	70.43	78.14	315.64	34.4
(2) 政府	26.86	33.29	45.04	57.60	72.67	235.46	25.7
(4) 海外貯蓄	73.07 (265.7)	78.13 (284.1)	76.92 (279.7)	71.42 (259.7)	66.91 (243.3)	366.45 (1,332.5)	39.9
(1) 美國援助(弗)	112.5	100.7	84.8	68.9	42.3	409.2	12.3
(2) 外資算入(弗)	100.6	137.6	153.9	157.6	189.6	719.3	21.5
(3) 請求權資金(弗)	73.8	73.6	73.8	67.5	64.5	353.2	10.6
(1) 無償資金(弗)	49.3	51.4	48.1	42.7	41.3	232.8	7.0
(2) 長期低利借款(弗)	24.5	22.2	25.7	24.8	23.2	120.4	3.6
計(弗)	286.9	311.9	312.5	294.0	276.4	1,481.7	44.4
(控除) 元利金償還其他(弗)	-21.2	-27.8	-32.8	-34.3	-33.1	-149.2	-4.5
計(弗)	265.7	284.1	279.7	259.7	243.3	1,332.5	39.9

3. 第2次 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있어서의 請求權資金의 役割

第2次5個年 計劃의 請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는 計劃期間中 約 2,200 億원에 달하는 莫大의 投資가 必要이며 이의 效率的인 滿達이 필요하다

現在의 計劃(暫定案)에 依하면 위의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財源滿達에 있어서

1) 計劃期間中 總投資의 60%는 國內貯蓄으로 滿達되나 나머지 40%는 海外貯蓄에 依存하고 있으며 國內貯蓄의 計劃額 達成을 懸念하는 1962年의 國內貯蓄率 7.7%를, 目標年度에는 13.7%로 充여야 한다.

2) 總投資所要額中 請求權資金(無償과 長期低利借款)은 約 11%에 相當한다.

二. 第1次年度(1966年)에 請求權資金이 增額되어야 할
理由

1966 年은 보다 빠른 經濟成長과 工業化의 基盤
을 構築하는 것을 目的으로 樹立執行한 第1次 經濟
開發5個年計劃을 完全히 매듭짓는 同時에 農業, 社會
間接資本等に 投資함으로써 第2次5個年計劃의 基盤을
確固히 하여야 할 故이다.

政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國內財源을 最大限
으로 動員하고 美國援助의 効率的인 使用과 外資誘致
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으나, 1966 年에 이룩할 事業
을 完遂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請求權資金이 導入
되어야 하는바 그 具體的인 理由는 다음과 같다.

- 1) 다음 表에서 보는바와같이 1966 年에는 無償
55 百萬弗과 長期低利借款 30 百萬弗 都合 85 百萬
弗의 請求權資金을 包含한 1.355 億圓을 投資하여

第1次5個年計劃事業을 完成하고 第2次5個年計劃의 基礎이 될 樣은 事業을 計劃하고 있는바 이中 精求 權資金으로 計劃하고 있는 重要한 事은 다음과 같
다.

가) 全天候農業用 水原開發事業을 着手하는 데 外資 2.5 百萬 幣, 內資 39 億 원 그리고 農業增產事業에 外資 6 百萬 幣, 內資 32 億 원 投資한다.

나) 水産振興事業과 漁船建造 및 改良에 外資 8 百萬 幣, 內資 19 億 원을 投資한다.

다) 中小企業施設의 改替 및 擴充과 機械工業育成을 爲하여 外資 18 百萬 幣, 內資 20 億 원을 投資한다.

라) 送電配電施設에 1.3 百萬 幣을 投資하여 施設을 改良하고 損失率을 低下시킨다.

마) 落後된 科學의 振興을 爲하여 科學技術用 實驗 裝置資材를 導入하고 不足한 技術을 배우기 爲하여

技術者 海外派遣訓練으로 外資 3百萬弗을 計劃한다.

甲) 船舶算入 및 建造에 外資 5百萬弗과 內資 2億원을 投資하여 船腹을 增加시킨다.

乙) 鐵道用品의 算入과 漢江鐵橋를 復旧키 爲하여 外資 7百萬弗, 內資 3億원을 投資한다.

丙) 國內生産이 不可能해서나 不足한 緊要 原資材인 肥料, 農藥, 化工藥品, 化學纖維, 鐵鋼材, 澆水, 有煙炭 等의 算入을 爲하여 30百萬弗을 計劃하고 있다.

2) 政府는 換率 및 金利現實化率 內資의 效率的인 動員을 爲한 體制를 整備하고 있으나 이로서 內資調達能力을 急激히 向上시키기는 어려우므로 請求權資金이 財源調達面에서 큰 役割을 할 것이다.

3) 1965年의 韓國經濟는 相當한 實效를 이룩하였으며

來年度에 主 繼續 安定基調을 堅持할 모든 方案을
 樹立하고 있으나 投資計劃의 增大 公共料金の 現美
 化에 依한 物價割裁要因이 全許 缺는 缺은 缺이다.
 따라서 請求權資金에 依한 原資材算入은 不足한 內
 資를 支援하는 爲便 重要物資의 需給을 可滿히 하
 여 物價安定의 中樞的인 役割을 하게 될것이다.

1966年度 投資의 財源調達

(經常價格)

(單位: 10億圓, 百萬圓)

	金額	構成比	備 考
1. 國民總生產	818.17	-	經濟成長率 7%
2. 總 投 資	135.48	100.0	
3. 國內貯蓄	81.75	45.6	
民 間	46.93	34.6	
政 府	14.82	11.0	
4. 海外純貯蓄(外)	73.73 (269.1)	54.4	
美國援助(外)	120.0	24.3	SA 60.0 PRO. 2 10.0 PL 480. 50.0
外資算入(外)	72.6	14.7	日本商業借款包含
請求權資金(外)	85.0	17.9	
無 償(外)	55.0	11.2	
長期低利借款(外)	30.0	6.1	
計 (外)	297.6	56.9	
(控除) 沉積金償還(外)	-9.5	-1.9	
計 (外)	288.1	54.4	

三. 請求權資金 第1次年度 實施計劃 (案)

單位: 千英鎊

	購買約預算額	第1次年度到着 子 尺 額	備 考
4. 無 價 資 金			
(一) 資 本 財			
1. 全天候養業用水源開發	3,055.0	2,505.0	
2. 農業增產事業	8,579.0	5,849.0 8,579.0	
3. 水產振興事業	11,014.3	3,169.3	
4. 漁船建造與改良	6,247.2	4,782.4	
5. 送電配電施設	2,300.0	1,300.0	
6. 科學技術實驗實習資料 與技術者訓練	3,000.0	3,000.0	
小 計	27,215.5	20,544.7 23,255.7	
二 原 資 材	30,000.0	30,000.0	

1. 肥料 2. 農藥 3. 메斗늘
4. 糖酸 5. 硝酸 6. P.V.A 粉
7. 스프링 8. 포리아크릴 화이버
9. 포리에스틸 화이버 10. 나이론 화이버
11. 鋼索 12. 와이어드 13. 棒鋼
14. 型鋼 15. 鋼板 16. 帶鋼
17. 알미늄호일 18. 有煙炭 19. 五크스
20. 竹材 21. 鋸長機具 肉加工機具
22. 外燃機具 23. 內燃機具 24. 鐵槌機具同
- 附屬品 25. 呂프及透心分雜品 26. 自動車附屬品

貿易計則上 制限品目
除外品目은 A2D5A
賣金外金이 包括
購買方式을 取捨
치다

小 計	30,000.0	30,000
清算計定債務相殺	4,573.0	4,573.0
合 計	61,788.5	57,828.7 66,070.7

	購買契約 予定額	第1次年度 列着予定額	備 考
B. 長期低利借款			
1. 中小企業施設改修拡充	20,000	15,000	Pro/Ag 署名額 50,000
2. 機械工業施設拡充	3,000	3,000	" 10,000
3. 漢江鉄橋復旧	1,000	900	" 1,000
4. 鉄道用品	6,000	6,000	" 6,000
5. 船舶導入及建造	10,800	5,100	" 10,800
6. 水利干欄浚渠船	3,300	-	" 3,300
7. 濟州道開発	200	-	" 200
合 計	44,300	30,000	
總 計	106,038.5	87,828.7 85,475.7	



→ 全天候農業 用水源 開發事業

1. 全天候農業 用水源開發事業이란 天水畝 또는 水利 不安

全畝 547千町步中 農業用水源의 開發이 可能한 386

千町步에 灌溉, 排水施設을 完備하여 年間 445千屯

의 米穀을 増産하기 위한 事業이다.

2. 上記 386千町步에 對한 水利施設은 揚水場

82千町步, 地下水 70千町步, 坎 29千町步 及 貯

水池 205千町步이며 所要事業費는 總 1,154 億

원이 다.

3. 上記 施設区分中 揚水場 及 地下水에 依한 152

千町步의 用水源開發에 所要되는 資金은 275 億원

이나 其中 175 億원 (外資 9百萬弗, 內資 150

億원)을 請求權資金으로 充當하고 殘余 100 億원

은 國內財源으로 支援토록 할 計劃이다.

4. 外資 9百萬弗中 第1次年度에는 揚水場施設用 主

要機資材와 地下水開發用 機資材, 調査, 試驗 及 施

工用機械 器具等 購買에 2,505 千弗, 內資 39 億圓
을 所要로 한다

(二) 農業增産事業

1. 農業增産事業이란 食糧의 自給自足을 目標로 農地
擴張과 土地의 利用을 增進시키기 위한

40 万町步의 農耕地 擴張

275 千町步 耕地 整理

29 千町步의 干拓 및 1,300 何所의 貯水池와

20 千何所 小智池 發達事業과 農機具 檢査施設의

確保 其他 酪農을 獎勵하여 農家所得을 向上시키기

위한 種畜의 導入等を 包呑하고 있다.

2. 上記와 같은 事業을 하기위한 總所要經費는 156

億 6 千萬圓 (外資 13.3 百萬弗, 內資 120 億圓)

이다

3. 外資 13.3 百萬弗中 第1次年度에는 農耕地擴張
耕地整理 및 貯水池 發築을 위한 施工用 槓械과
種畜導入 其他 農槓具 檢査施設器具導入을 위하여
~~8.5~~ 百萬弗, 內資 32 億원을 所要로 한다.
8.6

(三) 水産振興事業 및 漁船建造 또는 改良

- 1. 水産振興事業은 아직 零細性を 벗어나지 못하고
水産業의 近代化를 圖謀키 위한 基本施設을
本 國內 主要漁港에 對한 防波堤, 船着場, 物揚場等
漁業基本施設의 設置
- 나. 10 個 主要漁港에 對한 漁業前進基地의 設定
中 無動力 漁船의 動力化 및 各種 裝備改良
과 沿岸 漁船의 建造
- 마. 水産物 處理加工施設의 設置
- 바. 試驗研究, 漁業指導 및 技術者養成等を 包含하고

있다.

2. 이에 대한 總所要資金은 264 億圓 (外資 41.4 百萬弗, 內資 150 億圓) 이 所要되며
3. 外資 41.4 百萬弗中 第1次年度에는 漁業基本施設을 위한 基本資材導入, 試驗船導入 및 指導船導入, 生産 建造, 水産物 處理施設과 研究生敎養, 近海 및 沿岸 漁船建造 其他 漁船動力化 및 各種 裝備改良을 위하여 7.8 百萬弗 內資 13 億圓이 所要된다.

(四) 送變配電施設

1. 電源開發에 따른 發生電力을 需用家까지 신속하고 安全하게 輸送供給하기 위하여서는 送變配電施設의 擴張이 要請되며 1966 년부터 1971 년까지의 送變配電施設의 所要推定額은 277 百萬弗이다.
2. 上記 277 百萬弗中 日本國에서 購入이 可能한

~~III 古 密
CONFIDENTIAL~~

10.7 百万弗은 請求權資金을 使用코자 하며

3. 第1次年度에는 其中 1.3 百万弗을 所要로 하고 있다.

(五) 科學技術 實驗實習資材 및 技術者 訓練

1. 經濟開發計劃의 促進에 따른 技術系 人財 資源의 養成에 必要한 各種 實驗實習資材의 確保와 技術者의 訓練이 特急한 實情이므로

2. 請求權 資金中 14.0 百万弗을 使用하여 上記 施設算入을 確保하고 技術者의 海外訓練을 圖謀코자 하며

3. 이를 爲하여 第1次年度에는 3.0 百万弗의 外資를 所要로 하고 있다.

~~CONFIDENTIAL~~

(六) 中小企業施設 改替 또는 擴充

1. 鐵工業分野에 있어서 가장 큰 比重을 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目標 附加價值 成長率의 達成을 爲하여 이의 施設改替 및 擴充이 가장 緊急한바, 1966~1971 까지의 中小企業 施設改替 및 擴充에 所要되는 總 115 百萬弗中 80 百萬弗을 對日請求權 資金으로 先當코자 하며,
2. 이中 第1次 年度에는 最少限 15.0 百萬弗, 內資 11 億圓이 確保되어야 한다.

(七) 機械工業 施設擴充

1. 國內 市場의 狹少와 技術未備로 因하여 莫甚한 生産의 不振과 後進狀態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機械工業을 育成하여 各種 機械의 國產

化·比率을 높이기 위하여는 機械工業의 施設
擴充이 必要하다.

2. 우선 特別請求權 資金에서 10.0 百萬弗을
使用하여 優先 部門의 施設을 補完 乃至 擴
張코자 하며 이中 第1次 年度에는 3.0 百萬
弗, 內資 9 億圓을 所要로 하고 있다.

(八) 漢江 鐵橋 復旧

1. 現在 運行하고 있는 C 線 차에 6.25 事變
後 아직 復旧치 못한 A, B 線을 復旧하여
每年 激增하는 交通量을 緩和하여 漢江 鐵橋의
運行回數를 倍加코자 하며

工事量 { A線 1,110 m (上部 構造)
 B線 1,114 m (下部 構造)

2. 이를 위한 所要資金中 投資 1.0 百萬弗 內資 4億
원이며, 投資 1.0 百萬弗中 0.9 百萬弗과 內資 3億
이 第1次年度에 所要된다.

9) 柴油 動車 導入

1. 柴油 動車를 導入하여 客貨車를 分擔 運行하여
近郊旅客輸送 및 主要幹線列車를 運行하고 柴油化에
따른 運行經費의 節約을 위하여 6.0 百萬弗을 使
用하여 85 台의 動車를 導入코저 하며.
2. 短區間차의 列車增設의 時急성에 비추어 第1次
年度에 이를 全量 導入코저 한다.

(十) 船舶導入 및 建造

1. 現在 우리나라의 外航船舶 保有量은 148千吨에 지나지 않으며 1971年度의 總輸出入貨物量 1,000万吨의 50%를 우리나라 船舶에 依하여 輸送키 위해서는 327千吨의 船腹補充이 時急히 要請되며
2. 이를 위하여 對日請求權資金에서 47.0 百萬弗를 使用하여 32隻 133千吨을 國內에서 建造하고 9隻 68千吨을 導入코저 한다.
3. 이中 第1次年度에는 3,000 千級 2隻의 國內建造와 6,000 千級 貨物船 1隻 및 3,000 千級 油槽船 2隻의 導入에 5.1 百萬弗과 船舶建造에 內資 2億圓이 所要된다.

(土) 水利干拓用 後築船

1. 3個船団의 導入 (內容은 農業增産事業 参照)
2. 食糧增産計劃에 따른 農耕地 擴張에 副應키 위하여 第1次年度中에 購買契約이 이루어져 第2次年度初에는 導入이 完了되어야 한다

(三) 原資材 導入

1. 上記 諸事業에 所要되는 原資材所要는 다음과 같이 109 億 원인 바

全天候農業用水源開發事業	3.9 億 원
農業振興事業	32 "
水産振興施設 및 漁船建造, 改良	13 "
中小企業施設改善 等之 擴充	11 "
機械工業	9 "

船舶導入 및 建造	2 "
漢江缺橋復旧	3 "
計	109 "

2. 이中 1966年度 豫算 및 財政資金에 依한 支
援額을 除外한 83億원의 內實의 뒷받침을 爲해서
는 最少限 30.0 百萬帶 ($\$30,000,000 \times 275 \text{ 원} =$
8,250,000,000 원) 以上の 原資材의 導入이 必
要하며 導入된 原資材의 販賣代錢은 앞으로 設置
될 請求權資金 特別會計를 通하여 이를 事
業을 支援하게 될 것이다.

3. 原資材 導入品目은 肥料、農藥等の 農業資
材、메타놀、醋酸、硝酸等の 化工藥品類、스
프린 등의 化學纖維類、와이야 룩드, 鋼板
等の 金屬類等으로 貿易計劃上 制限品目を
除外하고는 AID/ISA 資金과 같이 包括購買

~~I CONFIDENTIAL~~
24

方式를 取하게 될 것이다.

~~III 極 密
CONFIDENTIAL~~

(参考. 1)

~~III 密 告 書
CONFIDENTIAL~~

全天候農業用水源開發事業

区 分	購買契約豫定額			第1次年度到着豫定額		
	品 目	数 量	金 額	品 目	数 量	金 額
外 全天候農業	油入 遮断器	12個	96		5	41
	計器用変流器	42	26		18	11
	計器用変压器	16	9		6	4
	線路開閉器	40	49		10	13
	可燃片断路器	33	46		1	2
	避 雷 器	22	24		6	7
	断 路 器	36	27		12	9
	懸重得子	14.680	37		6.800	17
	다 질 엔진	6台	40		2	8
	水溫水質計	45	13		45	13
	水位測定器	90	5		90	5
	電氣檢尸器	45	100		45	100

29

~~III 密 告 書
CONFIDENTIAL~~

~~III CONFIDENTIAL~~

26~

区 分	購買契約豫定額			第1次年度到着予定額		
	品 目	数 量	金 額	品 目	数 量	金 額
	電 探 機	8	15		8	15
	試 錐 機	27	157		27	157
	同附属品	^{PES} 12,700	154		4,200	51
	鑿 井 機	35	813		35	813
	同附属品	^{PES} 15,539	306		5,130	101
	測 量 機 具	49	215		49	215
	示 範 研 究 器 具	48	235		48	235
	水 理 試 験 器 具	96	200		96	200
	材 料 "	115	142		115	142
	土 質 "	82	140		82	140
	土 性 "	168	140		168	140
計			3,055			2,505

III 密 び 밀
CONFIDENTIAL

(参考. 2)

農業增産事業

区 分	品 目	購買豫定額		到着豫定額	
		数 量	金 額	数 量	金 額
1. 農耕地擴張	Bulldozer	140台	3,080	140 15台	3,080 330
2. 種畜導入			1,276		1,276
	種乳牛	1,020頭	(800)	1,020頭	(800)
	種肉牛	20"	(30)	20"	(30)
	種豚	1,000"	(200)	1,000"	(200)
	其他種畜 { 三才 雞 山羊	5,000首	(125)	5,000首	(125)
		23,000"	(46)	23,000"	(46)
		250頭	(75)	250頭	(75)
3. 貯水池浚渫	Suction dredger	3台	1,260	3台	1,260
	Cutter dredger	5"	2,335	5"	2,335
4. 農業資料検査機具	赤色線分光度計 外 147種	700個	648	700個	648
	計		8,599		5,849 8,599

(参考3)

水產振興事業與漁船建造改良

(單位：千圓)

	項 目	購 買 契 約 豫 定 額		第 1 次 年 度 到 着 豫 定 額	
		事 業 量	金 額	事 業 量	金 額
1. 水產振興事業	漁業基本施設	氣象豫報與無電局施設資材	170.0	氣象豫報與無電局施設資材	170.0
	漁業前進基地施設	10 個所	320.0	10 個所	250.0
	水產物處理加工施設	60 個所	400.0	30 個所	200.0
	試驗器械導入	-	400.0	-	200.0
	試驗船導入	80 疋×3隻, 150 疋×1隻, 300 疋×1隻	1,035.0	80 疋×3隻, 150 疋×1隻, 300 疋×1隻	1,035.0
	指導船導入	300 疋×1隻, 150 疋×2隻	859.3	300 疋×1隻, 150 疋×2隻	859.3
	“ 建造資材	80 疋×7隻, 150 疋×2隻, 300 疋×2隻	818.0	80 疋×5隻, 150 疋×1隻	343.0
	研究生派遣與 技術者招聘	30 名	72.0	30 名	72.0
	小 計		4,014.3		3,069.3
2. 漁船建造與改良	沿岸漁船建造	20 疋×90 隻	558.0	20 疋×70 隻	424.0
	大型機底船建造	100 疋×36 隻	2,541.6	100 疋×26 隻	1,835.0
	中型機底與 卅 五 三 等 漁船建造	50 疋×20 隻	430.0	50 疋×15 隻	322.5
	旋網漁船建造 (本 船)	100 疋×6 隻	316.0	100 疋×5 隻	305.0

項 目	購 買 契 約 額 定 額		第 1 次 年 度 到 着 額 入	
	事 業 量	金 額	事 業 量	金 額
旋網漁船建造 (附屬船)	40 疋 × 18 隻	551.6	40 疋 × 15 隻	295.5
" (運搬船)	100 疋 × 12 隻	720.0	100 疋 × 10 隻	600.0
捕鯨漁船建造	80 疋 × 4 隻	240.0	80 疋 × 3 隻	180.0
近海漁船建造	70 疋 × 6 隻	209.4	70 疋 × 4 隻	139.8
動力改良		440.6	33HP ~ 250HP 146 台	440.6
裝備改良		240.0	各種 204 隻	240.0
小 計		6,247.2		4,752.4
合 計		10,261.5		7,351.7

2. 피탈선박 보상청구문제, 1965

등록번호
2044

승선 수출 건설

재무부

재이재 1221.13.-1819 (72-4419) 1965. 8. 10.

수신 외무부장관 귀하
제목 미탈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 조희

1. 당부는 한일협정이 정식조인됨에 따라 민간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일청구권 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를 연구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별첨 청원서는 대일선박 반환요구와 관련하여 청구권조로 일본국으로부터 공여 받게 될 무상 3억불을 재원으로 미탈선박에 대한 보상조치를 하여 달라는 청원서인바 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사항에 관한 귀견을 참고코저 하오니 조속 회시하여 주심을 바랍니다.

가. 지난번 정식조인된 한일협정에는 한일 주요의제의 하나였던 한국의 대일선박 반환요구에 대한 전연 언급된바 없고 다만 청구권 부속문서의 "민간 상업신용 공여에 관한 교환공문" 제2항에 "30백만불에 달하는 선박수출을 위한 민간신용 제공을 일본정부가 협조한다" 고만 언급되어 있는바 선박 반환 요구의 고심경위와 그결과 여하

나. 당부의 견해로는 선박반환요구와 재산 청구권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청구권조로 수령하는 자금을 재원으로 미탈선박에 대한 보상조치를 고려함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귀견여하



남태도 사림성세

증산 수출 건설

재이재 1221.13.-

1965. 8.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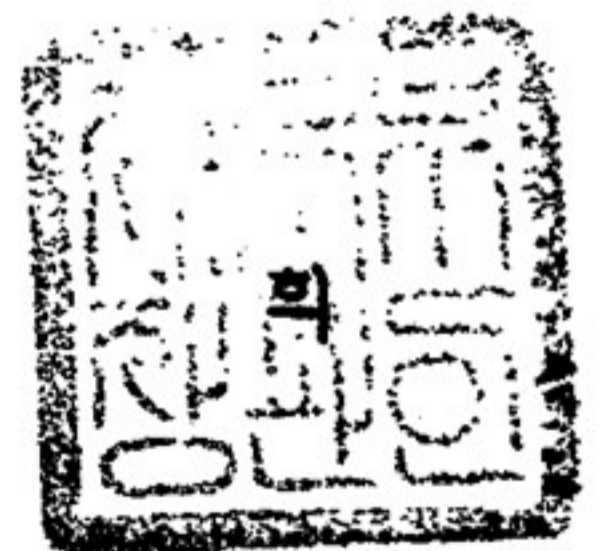
3. 확보시에는 별첨 청원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첨. 청원서 1통. 같

재무부장관

홍

승



납세로 자립경제

東州港業株式會社
釜山

16010

東州第 51 号

1965. 6. 5.

受信 朴正熙大統領 閣下

題目 請願書 (對日船舶請求權에 따른被奪船舶補償請求)

1 弊社는 日政當時 西日本汽船株式會社로서 朝鮮
郵船株式會社 (現大韓海運公社)에 다음가는 國內屈指
의 船舶會社이었으나 8.15 直前 日本政府에 依해서
徵發되는 被奪당한 船舶이 別紙 船舶明細와 같이 無慮
54 隻 (總噸數 12618 噸)에 達하여 會社가 破産狀態에
이르렀으나 韓日間 國交正常化後 被害를 賠償받게 될
것을 唯一한 希望으로 하여 西紀 1955年 2月 22日 字로
商號를 東州港業株式會社로 變更 (別添登記簿謄本參照) 하
고 營業을 繼續하면서 其間 自由黨政權當時는 勿論 最
近에 이르기까지 對日船舶請求權問題가 論議될 때 마다
當局에 提出하고 弊社 被害船舶에 對한 補償을 받기

為하여 至大한 關心을 갖이모 있었든것입니다

2. 第三共和國樹立後 積極的이고 意慾的인 努力이 奏效하여 未久에 韓日間에 國交가 正常化될 段階에 있고 이에 따른 船舶請求權을 包含한 3億弗의 請求權을 일게 된것은 비록 該類數는 甚다하더라도 至極히 多幸한 일이라고 思料합니다

3. 따라서 前記 請求權을 運用함에 있어서 第一 玆저 考慮하여야 할것은 8.1.5 前後를 통해서 가장 많
이 被害를 입은 業체가 最優先的으로 補償의 對象이
되어야 할것을 確信하는바입니다

왜냐하면 弊社와 같이 被害를 많이 입은 業체일수록 船舶請求權의 要因이 되는 比重이 크기때문입니다

4. 政府에서 賢明한 補償策이 講究되리라 思料되
으나 弊社로서는 過去 被害額의 幾分の 1이라도 被
害를 復舊코저하는 念願에서 下記와 如히 船舶을 新造

또는導入코저하오니 弊社의 익을한實情을 十分參酌
하시와 此際에 特別한 被害補償策을 講究하여주시
기를 請願하나이다

記

1.	2000 噸級	貨物船	3 隻
2.	3000 噸級	貨物船	1 隻

以上

釜山市中区大橋路 1 街 1 3 番地

東州港業株式會社

社長 金 千



對日賠償請求對象船舶明細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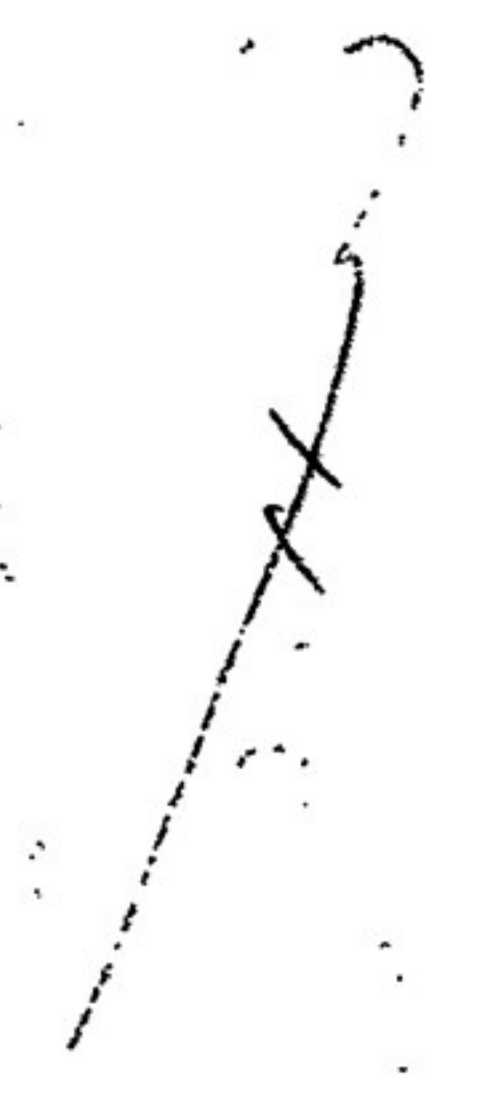
一連番	船名	總屯數	純屯數
1	晃麗丸	184.94	132.32
2	建仁丸	108.26	70.65
3	建永丸	108.26	70.65
4	正元丸	108.26	70.65
5	正安丸	108.26	70.65
6	가 나 리 아 丸	56.09	38.50
7	하 구 대 우 丸	70.11	45.67
8	福榮丸	56.15	36.56
9	初春丸	62.66	39.77
10	大昌丸	112.73	62.94
11	永安丸	195.26	128.84
12	興玉丸	155.30	124.76
13	第三十一良友丸	157.54	123.66
14	大進丸	116.20	62.25
15	興生丸	105.20	72.89
16	第二十八良友丸	186.88	106.17
17	平康丸	108.06	83.17

~ / ~

一連番 号	船名	總屯数	純屯数
18	平昌丸	108.06	83.17
19	咸陽丸	105.15	72.57
20	永仁丸	108.06	83.17
21	永長丸	110.90	85.77
22	青陽丸	108.60	71.45
23	天明丸	110.90	85.77
24	文永丸	108.06	83.17
25	文祿丸	108.06	83.17
26	天壽丸	110.65	85.15
27	建長丸	110.90	85.77
28	正和丸	108.23	68.71
29	正平丸	108.23	68.71
30	天仁丸	103.68	70.92
31	天和丸	103.12	71.13
32	陽徳丸	109.59	72.38
33	天正丸	103.12	71.13
34	晃陽丸	129.19	88.44
35	晃隆丸	90.52	68.09
36	宝城丸	200.16	139.46

一 番 号	船 名	總 屯 数	純 屯 数
37	長 安 丸	330.68	187.58
38	金 城 丸	330.68	187.58
39	晃 照 丸	330.93	233.57
40	鏡 城 丸	372.53	211.13
41	第=十三 良友丸	393.02	222.34
42	第 二 立 山 丸	394.96	199.77
43	第=十六 良友丸	449.59	297.33
44	新 義 州 丸	709.34	370.98
45	廣 山 丸	562.90	291.12
46	龍 頭 山 丸	516.32	299.02
47	白 光 山 丸	516.32	299.02
48	勇 武 丸	884.25	461.02
49	五 山 丸	1,148.18	628.62
50	忠 城 丸	884.25	461.02
51	太 西 丸	2,28.30	122.03
52	太 平 丸	197.21	105.96
53	주 바 메 丸	91.90	47.27
54	가 모 메 丸	131.61	80.17
計	5 4 隻	12,618.31	7,583.76

登記簿 第四式 又 號

登記の年月日 及登記官吏印	一商號	二本店	三支店	四目的
第一欄 早 第一五欄 外 第二十六欄 外 第二十七欄 外 第三十三欄 外 西紀 年 月 日 登記	由東京丸船株式會社	東京市中區大橋區新橋區 東京市中區大橋區新橋區 東京市中區大橋區新橋區 以下係小口		一、東京丸船株式會社 二、東京丸船株式會社 三、東京丸船株式會社 四、東京丸船株式會社 五、東京丸船株式會社 六、東京丸船株式會社 七、東京丸船株式會社 八、東京丸船株式會社
五 資本總額 六 一金一 株額	各 種 株 式	七 式 內 容 及 數	株式讓渡 の制限又 七 株券裏 八 書の禁止 規 定	
金一 株 額 五 月 廿 七 日				

騰寫
 校合
 (株式會社登記簿原本付紙) (用)

九 各株對 計叫拂込 止株金額	十 公告計 三方法	取 役 姓 及 所 名 住
監查役 五石良權	及住所 五石良權	十 存立時期 父は解散 三 事 由 十 開業前 に 利益の 四 配當規 定 株主に 對し 配當 利益を 株式 消却 規定

各株對計叫拂込止株金額

公告計三方法

取役姓名住所

監查役
五石良權

及住所
五石良權

十存立時期
父は解散
三事由
十開業前に利益の
四配當規定
株主に對し配當利益を株式
消却規定

十	六	十	七	十	八	十	九	十	二	十	一	
社債總額	各社債	債金額	社債利率	社債償還方法	社債償還期限	社債利息支拂方法及期限	社債募集委託會社	受託會社	商號			

二	十	二	三	四	五	六	七	八
各社債에	拂入할	金額	社債를株	式에轉換	을得할일	轉換의	條件	轉換에

三 十 三 得 달 期	三 轉 換 의	二 株 式 의	一 發 行 할	三 轉 換 에	三 株 式 을 他 種 의 株 式 로 換 할 일	十 三 株 拂 對 金 込 한 여	九 十 三 數 內 及	三 新 發 行
					三 人 의	三 清 算	四 年 月 日	三 解 散 의
三 十 三 六 의 年 月 日	三 清 算 結 了	五 住 所	十 姓 名	四 年 月 日	年	月	日	登 記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予 金庫中三十三萬五千元...
 金庫外三十三萬五千元...

以下系白

株式会社登記簿本用紙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西曆一九〇九年十月廿九日
其係行
...

...

...

...

...

...

此贈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此를 作成하고
原登記와 相違無함을 認證함

西紀 年 月 日

釜山地方法院

書記官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

...

...

...

...

...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株式會社登記簿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西曆一九〇九年四月廿四日 在東京府...
 董事會...

株式會社登記簿本用紙 (丙)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此項登記事項係由釜山地方官書記官... (Vertical text describing the registration details, including names and dates)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此項登記事項係由釜山地方官書記官... (Vertical text describing the registration details, including names and dates)

此贈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此를 作成 하오
原登記外 相違無함을 認證함

西紀 年 月 日

釜山地方官

書記官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決議事項
...

...

...

...

...

...

...

...

...

...

...

...

...

...

...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

株式會社登記簿本用紙 (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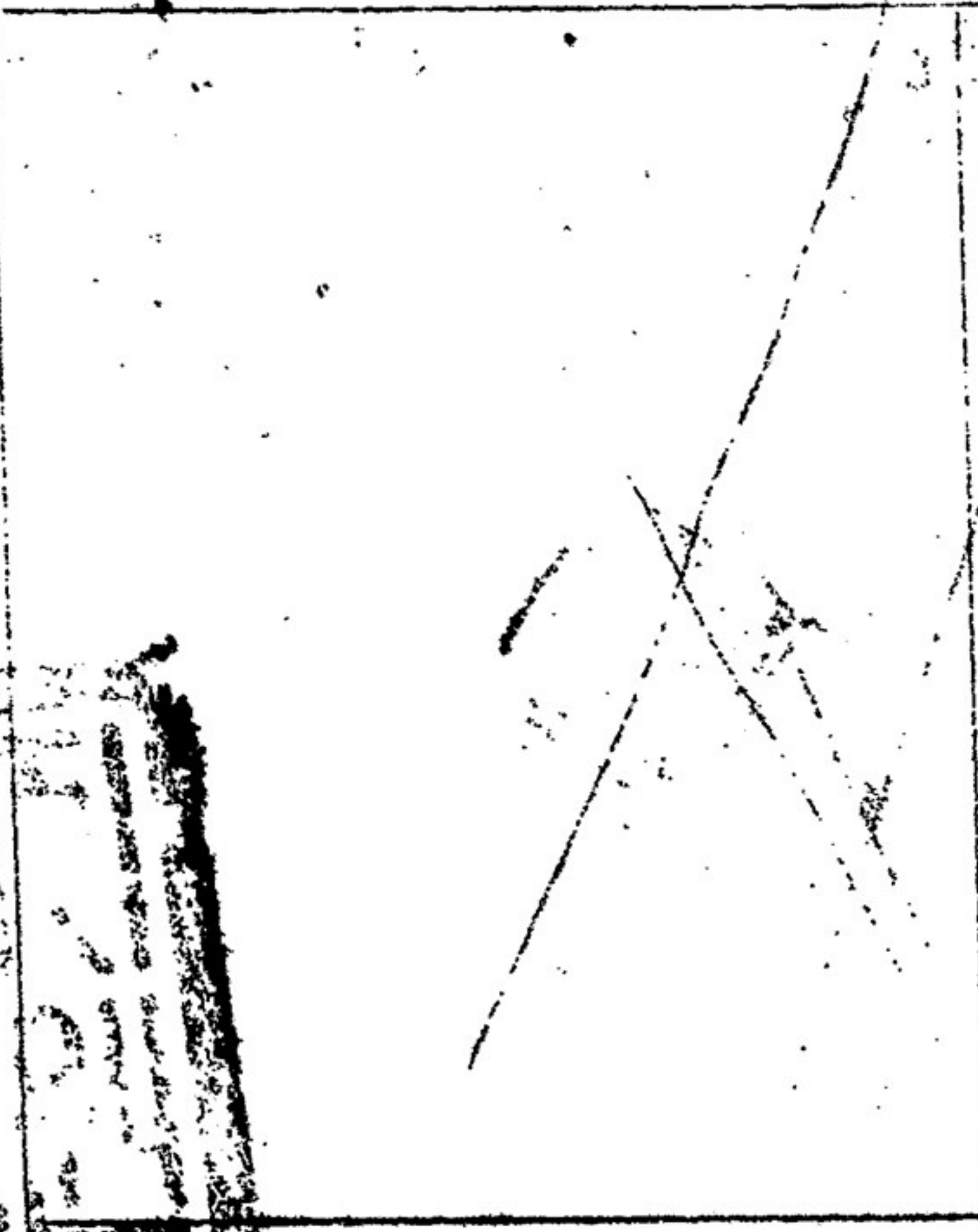
株式會社登記簿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事項
番號

登記事項 (變更欄)



此冊本은 登記簿에 依하여 此冊을 作成하고
原登記와 相違無함을 認識

西紀

年 月 日

釜山地方法院

書記官

Handwritten signature or official seal in the bottom left corner.

기 안 지

기 안 자	동북아과 김 태지	전 화 번호	공 보	필 요	불필요
과 장	국 장	차 관	장 관		
(외)	(인)		(沈官依命)		
협 조 자	홍상3장 (인)			보 존	
기 년 월	65. 8. 18.	시 행 년 월 일	통 계 관	정 서	기 장
분 류 기 호 문 서 번 호	외아북 722				
경 수 참 조	유 신 조	재무부 장관	발 신	장 관	
제 목	피탈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 조회에 대한 회신 함께				
<p>1. 재이재 1221.13-1817 (65. 8.10.)에 대한 응신입니다.</p> <p>2. 아국정부는 한일회담이 개최된후 동 회담에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가) 1945. 8. 9. 현재 한국에 치적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일본에 있는교과, (나) 1945. 8. 9. 현재 또는 그 이후에 한국수역에 있었던 일본국 또는 인본인의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전가 (가)의 각종의 대일청구와 관련하여 선박이 관련이 있는 최적 선박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반환의 의무가 없다고 하였으나 일부 선박의 상태조사에 응하였던 한편 (나)의 최후선박에 관하여는 토의조차 할수없다던 해당측의 주장에 양측의 견해가 대립되어 오면 중 한국의 대일 청구권 을 일괄하여 해결한다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선박 청구권도 포함 되어 일괄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하여</p> <p>3. 따라서 대일청구권의 일괄해결과 관련하여 일본이 무상 3억불, 장기 저리차관 2억불, 민간신용 신용제공 3억불 이상이 제공케 되었으며, 특히 민간신용제공 3억불 이상 중에는 선박도입을 위한 제공 3천만불이</p>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귀부에서도 양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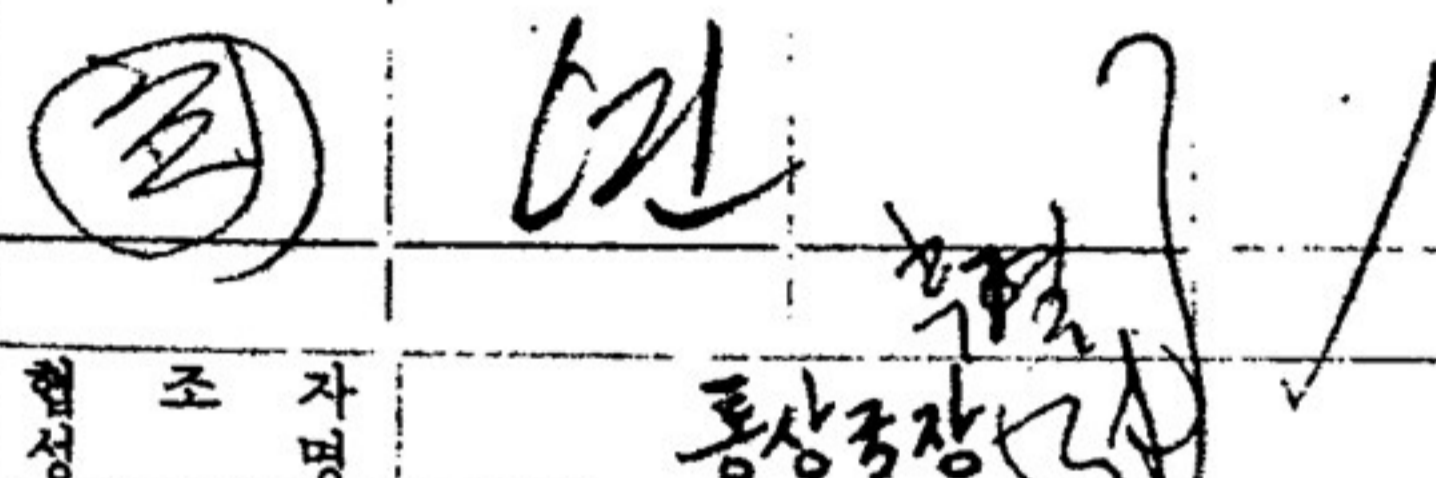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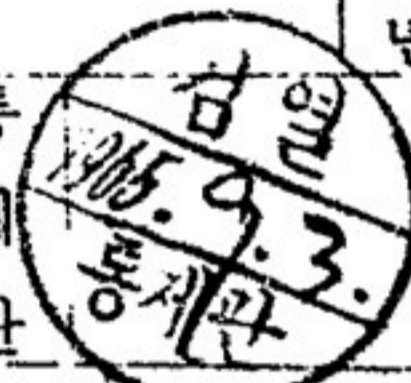
~~3. 이상으로 보아, 대입 청구권바함과 관련하여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선박청구에 관한 개인관계 청구에 대하여도 같은 취지의 조치가 취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부로서는 선박도입 민간금융 제공관계에 있어서는 확실한 선박관계 개인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우선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가 마땅치 않은가 하는 의견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3. 따라서 대입청구권바함과 관련하여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조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선박에 관한 개인관계 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취지가 취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참고로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 ^{문제} ^이 검토 ^이 경우의 것에서 ^이 보상조치가 취하여져야 하는 ^이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참고로 ~~이~~ ~~보상조치가 취하여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박 ~~이~~ ~~유니버~~ ~~가~~ ~~내~~ ~~항~~ ~~사~~ ~~의~~ ~~인~~ ~~상~~ ~~의~~ ~~대~~ ~~하~~ ~~의~~ ~~청~~ ~~구~~ ~~는~~
선박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 ~~러~~ ~~도~~ ~~개~~ ~~인~~ ~~관~~ ~~계~~ ~~로~~ ~~보~~ ~~상~~ ~~조~~ ~~치~~
선박관계에 관한 입증은 ~~이~~ ~~연~~ ~~민~~ ~~회~~ ~~가~~ ~~검~~ ~~토~~ ~~하~~ ~~는~~ ~~후~~ ~~에~~
보상조치가 행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 안 지

기 안 자	동북아과 김 태 지	전 화 번 호	-	공 보	필 요	불필요
과 장	국 장	차 관	장 관			
						
협 조 자	홍상국장			보 존	한 정	서 기 장
기 년 월	65. 8. 18.	시 행 년 월 일		통 제 관		
분 류 기 호 문 서 번 호	외아북 722					
경 수 참 조	재무부 장관		발 신	장 관		
제 목	피탈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조회에 대한 회신					
<p>1. 재이재 1221.13-1817 (65. 8. 10.)에 대한 응신입니다.</p> <p>2. 아국정부는 한일회담이 개최된 후 동 회담에서 각종의 대일청구와 함께 선박에 관하여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가) 1945. 8. 9. 현재 한국에 지적(置籍)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일본에 있는 것과, (나) 1945. 8. 9. 현재 또는 그 이후에 한국수역에 있었던 일본국 또는 일본인의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선박을 포함하여 대일청구 전반에 관하여 청구의 법적근거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에 있어서 양측의 견해가 대립되어 오면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일괄하여 타결한다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선박 청구권도 포함되어 일괄 해결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대일 청구권의 일괄해결과 관련하여 일본이 무상 3억불, 장기 저리차관 2억불, 민간신용 신용제공 3억불 이상이 제공케 되었으며, 특히 민간신용 제공 3억불 이상 중에는 선박도입을 위한 제공 3천만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귀부에서도 양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p>						

57

20

3. 따라서 대일청구 전반과 관련하여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박에 관한 개인관계 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고려가 취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참고로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검토의 결과, 어느 부분에 대하여 보상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에는, 우리정부가 한일회담에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청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타 청구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에 있어서 법적타당성과 사실관계등이 같지 않기 때문에 각 case별로 권리의 내용과 사실의 입증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상조치가 행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

외 부 부

외아복 722

1965. 9. 2.

수신: 재무부 장관

제목: 피할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조치에
대한 회신

1. 재이재 1221.13-1817 (65. 8.10.)에 대한 용신입니다.
2. 아국정부는 한일회담이 개최된 후 동 회담에서 각종의 대일청구와 함께 선박에 관하여는 일본정부에 대하여 (가) 1945.8.9. 현재 한국에 치적(遺籍)하고 있는 선박으로서 일본에 있는 것과, (나) 1945. 8. 9. 현재 또는 그 이후에 한국수역에 있었던 일본국 또는 일본인의 선박의 반환을 요구하였는 바, 선박을 포함하여 대일 청구 전반에 관하여 청구의 법적근거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에 있어서 양측의 견해가 대립되어 오던 중 한국의 대일청구권을 일괄하여 타결 한다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함으로써 선박청구권도 포함되어 일괄 해결을 보게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대일청구권의 일괄해결과 관련하여 일본이 무상 3억불, 장기 저리차관 2억불, 민간신용 신용제공 3억불 이상이 제공케 되었으며, 특히 민간신용 제공 3억불 이상 중에는 선박 도입을 위한 제공 3천만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귀부에서도 양지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3. 따라서 대일청구 전반과 관련하여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선박에 관한 개인관계 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고려가 취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 참고로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한 검토의 결과, 어느 부분에 대하여 보상조치가 취하여지는 경우에는, 우리정부가 한일 회담에서 일본정부에 대하여 청구한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야도

여타 청구권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내용에 있어서 법적당성과
사실관계등이 같지않기 때문에 각 case 별로 권리의 내용과
사실의 입증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보상조치가 행하여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

외 부 부 장 관 이 동 원

24

증산 수첩 거성

재무부

제이제 1221.15.-2143 (72-4419)

1965. 9.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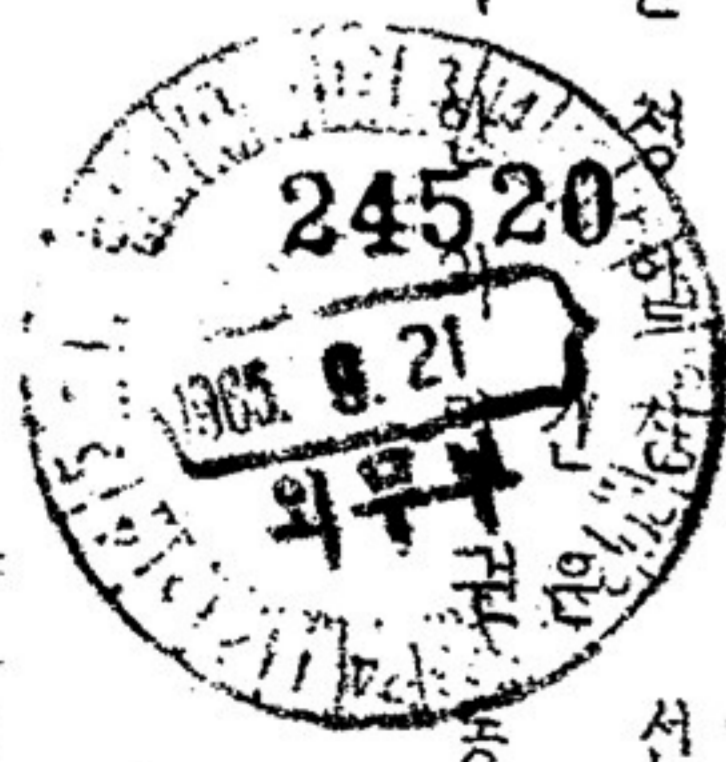
수신 외무부장관 귀하

제목 미탈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정연서 처리에 관한
의견 제조회

1. 1965. 8. 10 자 제이제 1221.15.-1017 및
1965. 9. 2 자 외아북 722-1472 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전기 공한에 의한 귀회보에 의하면, 거반
한일양국간에 타결된 청구권에는 선박청구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인관계 청구에 대한 보상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선박에 관한 개인청구에 관하여도 같은 고려
가 취해져야 한다는 내용인바 이는 귀부가 본건에 관
한 국회 외무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하여 행한 답변내용
(1965. 6. 28. 외아북 722-10,539 참조) 과 상이한 점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즉 귀부의 국회 외무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답변요지는 " 1965. 4. 3. 양국외상간의 합의사항에 의하
여 한국의 선박청구권 및 일본의 소위 나포어선에 대
한 청구권이 소멸되었음이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일본
국에 대하여 총액 30 백만불에 달하는 선박관계
비용을 제공키로 되었다 " 고하여 한국의 선박청구
일본의 나포어선 청구권과 상쇄처리 되었으며 따라서
중 선박청구권은 청구권조로 공여받게 될 무상 3억불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민간신용공역외 관련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외무부

1965. 9. 20

외무부

24

증산 수흥 진상

제이재 1221.15.-

1965. 9. 18.

4. 따라서 선박청구권에 대한 고선경위에 비추어
 무상 3억불을 재원으로 선박관계 개인청구권을 보상함은
 이론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국부의 견해였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전가 1965. 9. 23 지 외의부 722-14712 호 공한
 예 의한 견해와 국회 외무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한 답변
 요지의 해석상 관련성을 알리수심을 바랍니다. 끝

재무부장관

홍

승



관	과	장	관
김	(국) 최	연	/

삼석로 자립생계

기 안 지

기 안 자	동북아과 공로명	전 화 번호	공 보	필 요	불필요
과 장	국 장	차 관	장 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외</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신</div>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김</div> </div>					
협 조 자 명	30522장 <i>김영남</i>			보 존 한 정	서 기 장
기 년 월 일	65. 9. 24.	제 행 일	통 계 관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50%;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65. 9. 25 김영남 </div>	
분 류 기 호	외아복 722		발 신	<div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김</div> 장 관	
경 수 참	유 신 조 재무부장관				
제 목	피탈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 재조직 회신 1. 1965. 9. 18. 자 재이재 1221.13-214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부는 전기 공한에서 당부가 1965. 6. 28. 외아복 722-10, 539 호로 국회 외무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선박 청구권에 관한 답변과 귀부에 대한 1965. 9. 2. 자 외아복 722-14712호의 견해가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고 귀부는 당부의 국회 외무위원회에 대한 답변에 언급하여 대일선박 청구권은 일본의 대한 나포어선 청구권과 "상쇄처리"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권조로 제공될 무상 3억불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민간신용 제공과 관련" 이 있으며, "고섭경위에 비추어 무상 3억불을 재원으로 선박 관계 개인청구권을 보상함은 이론상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 귀부(외무부)의 견해였던 것으로 사료" 된다고 하고, 상기의 귀부에 대한 9. 2. 자 <i>김영남</i> 의 견해와 국회 외무위원회에 대한 답변요지의 해석상의 관련을 물었습니다. 3. 당부의 국회 외무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대일선박 청구권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고섭의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한일회담 고섭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당초부터 대일청구권의 일부로서 일본에 대한 선박청구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회담 도중에 이를 일반 청구권에서 분리하여 고섭한 것은 외교 고섭 기술상의 문제였으며, 동 선박문제가 대일청구권의 테두리 안에 속한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것은 6.22.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1)"의 2. 협정 제2조에 관하여, (g) 및 (h)에 의하여도 분명합니다.

4. 따라서 선박청구권은 "8개 항목"으로 불리우는 "대일청구요강" 중의 모든 다른 항목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일청구권의 일부이며, 또한 금번 체결된 한일 양국간의 관계협정에서 청구권 전반이 해결된 것은 계약국 당사자인 국가간의 관계에서 해결된 것이며, 그 국내에서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부는 선박에 관한 개인관계의 청구도 대일청구 전반과 관련하여 개인 관계 청구의 보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항목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상세한 사항은 계속 외아북 722-14712 (65. 9.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외아복 722

1965. 9. 25.

수신: 재무부장관

제목: 피할선박 보상청구에 관한 청원서 처리에 관한 의견 재조치 회신

1. 1965. 9. 18. 자 재이재 1221.13-2143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부는 전기 종합에서 당부가 1965. 6. 28. 외아복 722-10,539호로 국회 외부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일선박 청구권에 관한 답변과 귀부에 대한 1965. 9. 2. 자 외아복 722-14712호의 견해가 상이한 점이 있다고 하고 귀부는 당부의 국회 외부위원회에 대한 답변에 언급하여 대일선박 청구권은 일본의 대한 나트어선 청구권과 "상해처리" 되었으며 따라서 "청구권으로 제공될 무상 3억불과는 관련이 없고 다만 민간신용 제공과 관련" 이 있으며, "고성 경위에 비하여 무상 3억불을 재원으로 선박관계 개인청구권을 보상 할은 이론상 마땅하지 못하다는 것이 귀부(외무부)의 견해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고, 상기의 귀부에 대한 9. 2. 자 종합의 견해와 국회 외부위원회에 대한 답변오지의 해설상의 관련을 물었습니다.

3. 당부의 국회 외부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대일선박 청구권에 대한 일본정부와의 고성외 과정과 그 결과를 설명한 것입니다. 한일회담 고성과정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당초부터 대일청구권의 일부로서 일본에 대한 선박청구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며, 회담 도중에 이들 입법 청구권에서 분리하여 고성한 것은 외교고성 기술상의 문제였으며, 동 선박분제가 대일청구권의 테두리 안에 속하다는 당초의 입장에 변경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이것은 6. 22. 조인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대한 "합의 의사록(1)"의 2. 열정 제2조에 관하여, (g) 및 (k)에

의하여도 분명합니다.

4. 따라서 선박청구권은 "8개 항목" 으로 불리우는 "대일 청구요강" 중의 모든 다른 항목과 같이 우리나라의 대일청구권의 일부이며, 또한 금번 체결된 한일 양국간의 관계협정에서 청구권 전반이 해결된 것은 제약국 당사자인 국가간의 관계에서 해결된 것이며, 그 국내에서의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당부는 선박에 관한 개인관계의 청구도 대일청구 전반과 관련하여 개인관계 청구의 보상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있어서 타항목과 동일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하며, 이를 검토함에 있어 상세한 사항은 계속 의아복 722-14712 (65. 9.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외무부장관 이 동 원

3. 한국출신 전범자단체 '회향회'의 국가배상 탄원,

1965-66

동북아리

본

2

주 일 대 표 부

주일정 722 - 226

1965. 7. 5.

수신: 외무부 장관

제목: 한국 출신 전범자 보상

1. 당지의 한국 출신 전범자 단체인 "동진회"로부터 일본국 정부에 대한 보상 청구권이, 한일간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관계 서류의 제시로 문의하여 왔으므로, 별첨 관계 서류를 송부 하오니 이에 대한 아국 정부의 견해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참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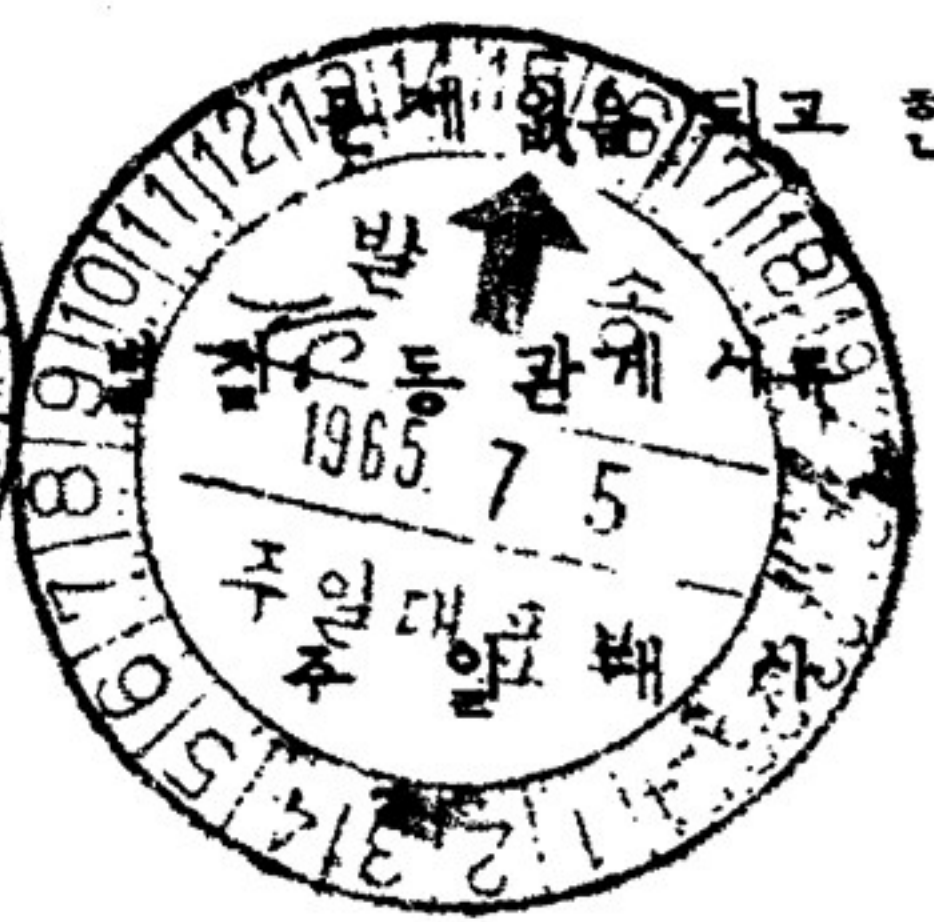
동회 대표의진술에 의하면 참고 사항은 다음과 같음.

병사자 23명

유무기형 125명

유무기형 125명중 한국으로 63명이 영주귀국, 2명이 자살 (유가족 없음).

2명이 병사 (유가족 없음)하고 5명이 이북으로 북송 (유가족



1부. 갈

김 동 조



集鴨列務所出所方三國人の保護対策について

昭和三〇、七、二八

厚	大	法	外	内
生	裁	務	務	閣
次	次	次	次	官
官	官	官	官	房
				副
				長
				官
				甲
				合

一、一時居住施設について

(ウ) 一時居住施設を、韓国人及び台湾人の別に従い、それぞれ個別の適当な更生保護会をとり、設置せしめること。

(ロ) これに要する経費として、更生保護会に対し、総額約三百万円の補助金を交付し、かつ、社会福祉事業振興会をとり、総額約三百万円を貸付けせしめること。

(イ) 右補助会の予算は、与りあえず、法務省の予算をもりまか

なうが、本年度内に大蔵省において補正人の措置をとり、また、更生保護会の社会福祉事業振興会への返済金については、明年度の予算措置において善処すること。

二、生業資金の貸付について

(イ) 適当な事業計画を有する者については、おとむね、国民金融公庫の更生資金貸付の例に準じて、貸付ができるよう、法人格を有する適当な団体に、これに必要な資金を交付し、貸付業務を実施させること。

(ロ) 右の資金は本年度約三百万円とし、厚生省引揚者等、保護費の中においてまかなうこと。

以上



要 請 書

私達、韓国台湾出身戦犯者は、貴下の私達に対する御配慮に謝意を表します。またこの度は東南アジア及び訪米等の大任を遂行して帰国された貴下に敬意を表するものであります。戦時、戦後を通じて重要政務に専念し又巢鴨拘禁の体験を有られた貴下は、私達の立場及び境遇については十分御承知のことと存じますので、ここで殊更に反復して申上げることをご控えたいと思います。たゞここで申上げたいことは、一口に「戦犯」と言つても私達はその境遇におかれた因果関係が日本人同僚のそれと全然違ふということでもあります。このことについては過去数年にわたり私達の事情を日本政府に訴願して参りましたので貴下は既に御存じのことと思ひますが、兵役の義務のなかつた私達でありましたが日本国の危急存亡の急務に応じその国策遂行のために昭和十七年六月二九年の契約で日本軍に徴用され南方各地に派遣されて、都會のいゝ時は「日本人」、都會の悪い時は「朝鮮人」、台湾人、と呼ばれながらも忠実に軍務に従事し現地において終戦になりました。そして私達は軍務中の正常勤務が問責され四九名は死刑に、二七二名が無期、有期の重刑に処断されて現地の刑務所で服役中、韓国出身戦犯は昭和二十六年八月、台湾出身戦犯は昭和二十八年八月を以つて全員

日本の巣鴨刑務所に移管されました。

当時私達は祖国の隣国たる日本に來た喜びと対日講和への大きな期待をもつて、その日の來るのを待焦れていたのであります。ところが、アメリカ軍管理が今度は日本政府の手に依つて直接私達を拘禁管理するに至つたのであります。私達は過去、日本國のために忠誠を尽くせ、何等日本の國法を犯していない私達を、然も才三國人たることが顯然としているにも拘らず、日本政府は自國の利益のために私達を強制的に拘禁を続けたいのであります。そこで私達は昭和二十七年六月日本弁護士連合會の協力のもとに日本國最高裁判所に釈放を請求して提訴しましたが、心外にも私達の請求は却下されて服役を続けました。其後それぞれ刑期を満了し、家族は勿論、誰一人として身寄りの無い生存競争の激しい異國日本の社會に放り出されたのであります。軍隊生活から直結した永い間の牢獄生活に依つて青年期を踏みこじられたのであります。その上就職に必要な技術を習得する機会すら絶無であつた私達の現今の生活が如何に窮迫しているか、また一方支柱を失なつた故郷の遺家族及び留守家の生活が周囲の事情と相俟つて物心両面とも如何に慘憺たるものであるかを貴下は容易に御推察下さるものと信じます。

私達は常に従軍時も拘禁中も否、出所後も才三國人であるが故に、多くの悲哀に耽溺されておりますが、その中でも刑死された故友及びその遺家族に対して日本政府は一体これまで

如何なる処置をお取りになつたでしようか。誠に遺憾に堪えない次才であります。

私達に生命も、青春も、あらゆる犠牲を強要した日本政府は道義的責任においても、誠意をもつて私達のこの胸中を察して頂きたいと思ひます。

私達は以上申上げたことを要約するとつまり

一、日本政府は兵役の義務のない私達を強制的に徴用した。

二、日本政府は服務期間二ヶ年契約を履行せず終戦まで服役させたために拘禁せられることゝなつた。

三、日本政府は連合国との諸条約締結時に私達才三国人の立場を考慮しなかつた。

四、日本政府は講和条約発効後、自国の利益のため私達を直接拘禁した不当性。

五、日本政府は、従軍時、拘禁中及び出所後を通じて私達に対し多くの不当な処遇があつた。

以上の点を慎重に考慮致した結果、日本政府一吉田、鳩山、石橋内閣に国家補償として

○ 才三国人戦犯刑死者の遺家族に対し金五百万円也の支給（一柱当）

○ 服役した才三国人戦犯に対しでは、逮捕日から出所日までを通算、日当五百円也の割合

にて支給（一人当）

を要請し、交渉して参りました。然し、善処するといふ応待だけで今だに解決のきざしはみ

先ません。そこで、私達は懸案事項である国家補償を更めて貴下に強く要請致します。
何卒私達の要請に特別の御配慮を切望し、御回答をお待ちしております。
尚御参考までに別紙「交渉経過の要点」を添附します。

昭和三十三年八月十四日

韓国出身戦犯者同進会

代表

鄭	李	高	朴	金	文	金	金	朴	李
殷	大	在	昌	完	濟	基		允	鶴
錫	興	潤	浩	根	行	永	廉	商	来

台灣出身戰犯者同志會

代表

林

東

簡

水

許

錦

陳

清

歐

丙

陳

新

丁 甲 川 茂 渡 雲

日本國內閣總理大臣

岸

信

介

殿

日夜政務に精勵され、この度は重要政務に就任された貴下に謹んで敬意を表明し、心からお喜び申し上げます。

唐突ではありますが、貴下の格別の御厚情に期待し、書面をもつて請願申上げることをおらかじめ御詫びいたします。

私たちが、かつての韓国出身戦犯者は、いずれも昭和十七年六月、日本軍に徴用されて南方各地に従軍し、その結果、戦争犯罪の罪に問われ、二十三名が死刑に、一二五名が無期有期刑の重刑に処されました。

外地と兼鴨刑務所における永年の拘禁生活後、幸いにして生を得て釈放された者も、家族や知己もなく、またしたがって生活基盤の全くない異国の日本社会において、どんなに苦しみに満ちた生活をつづけてこなければならなかつたか、幾人かの病死者や自殺者の出たことをもつて充分御諒察いただけると思えます。

ところで私たちは、今日なお精神病院に隔離収容されている二名の友人、木村・藤本両君（別紙参照）の存在について御報告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両君の発病の原因は、いりまでもなく長い獄中生活の苦しみに起因しています。両君の魂を無残に引き裂き、哀れな虜人にしたのは他の何者でもなく、まさにかわゆる才三国人ではあるが、日本軍隊の一員として駆遣された戦争犯罪者としての拘禁生活そのものであるります。

両君は果嶋から「仮出所」ということで、そのまま精神病院に移送されました。両君は、かくて終ることのない終身徒刑囚の生活を今日もなお引続いて余儀なくされています。

しかし、日本政府は、未だ両君に一度の見舞いすら致しておりません。その事実が、私たちにとつて、まことに腹解に苦しむところであります。

両君の病状は、いまのところ治癒の見込みがたちません。担当医

師と私たちの間において種々検討した結果、両君が金快するかもしれない唯一にして最大の可能性は、両君が祖國に帰り、父母兄弟の下で療養する以外にないという結論に達しました。

たとえ医学的に断定できなくとも、二十年間相見えることのなかつた父母兄弟の暖い眼蓋に見守られ、二人が生れ、育つてきたなつかしい大地の香りに包まれて生きることが、両君の病状にとつて有利でないといえましようか。人道的にも、それは当然取られねばならない措置と思ひます。

以上の事情を御賢察の上、日本政府が左記事項について格別の措置を構じられるよう、ここに請願いたします。

記

- 一 両君に慰籍措置を構じること
- 一 帰國後の療養費を支給すること
- 一 帰國目的の地まで付添人をつけること

一 帰国に必要な経費及び諸便宜を計ること

昭和三十一年七月三十日

韓国出身戦犯者同進会

会長 李 大 興

厚生大臣

西村 英一 殿



戦後関係朝鮮台人入院患者名簿 昭二七・一〇・一現在

氏名	国籍	留守宅	入院月	裁判	備考
木村泰誠 (朴泰誠)	韓国 精神病 (精神分裂症)	全羅北道金州府八達町六八 父 朴徳根 千葉県千葉郡普田村通田 国立下総療養所	昭和26.11.9 (仮出所と 同時入院)	英国 十年	生活保護法に拠つて 入院 (現在退院の見込なし、 30.7.13調)
慶本永吉 (李永吉)	朝鮮 精神病 (神経症)	平安北道寧辺郡龍山面龍岨 洞 兄 李水錫 千葉県千葉郡普田村通田 国立下総療養所	昭和26.11.9 (仮出所と 同時入院)	蘭印 十年	生活保護法に拠つて 入院 (現在退院の見込なし、 30.7.13調)

集刑務所出所第三國人の慰撫について

37. 10. 11
内閣審議室

1. 問題の経緯

(1) 太平洋戦争中、台湾人及朝鮮人は、昭和17年以降軍の募集により、軍属、傭人の身分をもつて2年契約で主として俘虜収容所關係に動員した。終戦後、これらの者のうち321名が戦犯（対英、蘭印軍關係）に問われ、49名が死刑、272名が無期又は有期の刑を受けた。

(2) 在日第三國人戦犯者は、集刑務所後団体をつくり、台湾人出所者關係は友和会（会長 木村篤太郎氏）、朝鮮人出所者關係は清交会（会長 田中武雄氏）に属し、従来から数次にわたつて援護又は補償に関する政府の配慮を要望してきている。ことに、昭和31年2月ごろには、

(イ) 刑死者の遺族に対し500万円を支給すること。

(ロ) 服役戦犯者に対し逮捕日から出所日まで1日あたり500円を支給すること。

を要求した経緯がある。

2. 政府の措置

(1) 集刑入所中（昭和28年8月～32年4月）、厚生省はその家族（被身者の場合は横立て）に対し、金、暮に各4000円の見舞金を支給した。

(2) 昭和30年7月28日付閣議報告「巣鴨刑務所出所第三
国人の接應対策」に基づいて、一時居住施設及び生業資金
につき接應を行なった。

このうち、一時居住施設については、法務省保護局から昭
和30年度及び昭和31年度に経費合計1,000万円を友
和会及び清交会に交付して、台湾人出所者関係3箇所、朝
鮮人出所者関係3箇所の施設を設けた。これらの施設は現
在もなお利用されている模様である。

また、生業資金については、厚生省労働局から、昭和30
年～32年度にわたり、合計645万円を、財団法人更生
助成会に委託し、1人5万円を限度として、期間5年以内
利率年6分の条件で貸付を行なった。なお、この貸付金の
その後の償還状況は良好ではない模様である。

(3) 昭和32年度予算において、法務省に「巣鴨刑務所特定
出所者等接應費補助金」として660万円(132人分)
を計上し、友和会及び清交会を通して、126人に対し、
1人につき5万円を生活資金として支給した。(6人分は
帰国その他の事情のため支給できなかった。)

(4) 昭和33年12月26日付閣議了解「巣鴨刑務所出所第
三国人の接應について」に基づき、特別な接應の措置とし
て1,260万円(1人につき10万円ずつ126人分)を
内閣官房長官から交付し、なお、生業の確保、公営住宅等
先の人権などについて極力好意的な取扱いをすることとな

つた。

このうち、生業の確保については、台湾人出所者関係のペンギン自動車株式会社（代表者 簡水波。保有台数23台）及び朝鮮人出所者関係の同進交通株式会社（代表者 李大興。保有台数22台）に対し、それぞれ、昭和35年7月13日に、一般乗用旅客自動車運送事業（タクシー）の免許が与えられており、この両社とも現在営業を続けている。また、公営住宅等への入居については、「巣鴨刑務所出所第三国人の公営住宅への優先入居について」（昭和34年2月26日住発第49号）により、建設省住宅局長から東京都を含む17都道府県知事に対して通牒が寄せられ、第2種公営住宅の入居者の選考に当たっては、これらの者を、住宅の凶悪度が著しく高いものとして優先的に取扱いより配慮している。

3. 補償要求に関連する法律問題

上記(1)の(2)の補償要求の背景となる主張について、政府がとつた法的見解は次のとおりである。

- (1) (従軍強制の問題) 兵役義務のない者を従軍に強制した事実はなく、志願兵制度、軍属募集等の正規の手続によつた。
- (2) (2年の従軍契約期間の不履行の問題) 能う限り2年をもつて復員させており、その他は、戦地における帰国不可能の状況のまま、やむを得ず延長した。
- (3) (従軍中の俸給の一部不払及び天引貯金の問題) これは当時の現地各部隊における慣行等により行なわれたものと思われるが、いずれにせよ、台湾人については中国との平和条約第3条及び朝鮮人については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第4条の(2)に規定する台湾又は朝鮮の当局との特別取極の締結をまつて解決すべき問題である。
- (4) (退職金及び在監中の俸給等の不払の問題) 連合軍の指令により戦犯者はもとより、大部分の軍人及び判任待遇以上の軍属に対しては、退職金は支給できなかつた。もつとも、在日第三国人戦犯者に対しては、昭和32年度に法務省から生活資金を支給した際(2の3)、一時恩給相当額が計算上その資金の金額の中に包含されている。また、当時の規定によれば、逮捕の日に退職したものとみなされることとなつており、日本人であるか否かを問はず、在監中

① 賠償等を支給すべき根拠がない。

(5) (日本国政府による暴行拘禁の責任の問題) 講和条約発効後の拘禁は、平和条約第11条及び旧「平和条約第11条による刑の執行及び赦免等に関する法律(昭和27年法律第103号)」に基づいて行なわれたもので、最高裁判決(昭和30年7月30日)により適法な処置であることが明らかであり、これに伴う補償責任はない。

(6) なお、各戦犯者において、金銭償還等につき具体的な反証があれば、訴を裁判所に提起して解決を求めればよいことは勿論である。

以上のとおり、政府としては、一般に補償要求に応ずべき義務はないとしつつ、在日第三人戦犯者のおかれてきた特殊な事情にかんがみ、これらの者を慰撫するため、各種の援護の措置を講じて今日にいたっている。

國家補償要請額

韓國出身
戰犯者
同進會

韓国出身戦犯者同進会

37. 11

国家補償及慰籍額

種 別	人 数	在監年月日数	補 償 額	慰 籍 額	療 養 費	合 計
刑 死 者	23		115,000,000 ^円			115,000,000 ^円
帰 国 者	68	363. 0. 21	66,258,000			66,258,000
在 日 者	57	390. 9. 9	71,316,000	9,000,000	4,200,000	84,516,000
計	148	753. 10. 0	252,574,000	9,000,000	4,200,000	265,774,000

在日者慰籍及療養費内訳

	区 分	人 数	慰 籍	療 養	合 計	備 考
1	自 殺 者	2	2,000,000 ^円	円	2,000,000 ^円	
2	病 死 者	2	2,000,000		2,000,000	
3	精神異常入院中	2	2,000,000	4,200,000	6,200,000	
4	肺 結 核 入 院 中	1	500,000		500,000	
5	肺 結 核 者	4	2,000,000		2,000,000	
6	戦 傷 病 者	1	500,000		500,000	
7	健 在 者	45				
	計	57	9,000,000	4,200,000	13,200,000	

算 定 基 礎

1	刑 死 者	5,000,000円×23名=115,000,000円
2	帰国者在監日数	363年-21日=132,516日 500円×132,516日=66,258,000円
3	在日者在監日数	390年9月9日=142,632日 500円×142,632日=71,316,000円
4	総 在 監 日 数	753年10月=275,148日 500円×275,148日=137,574,000円
5	自 殺 者	1,000,000円×2名=2,000,000円
6	病 死 者	1,000,000円×2名=2,000,000円
7	精 神 異 常 者	1,000,000円×2名=2,000,000円
8	結核及戦傷病者	500,000円×6名=3,000,000円

刑 死 者

	氏 名	裁判国	刑 別	執行年月日	備 考
1	金 榮 柱	英	絞首刑	21 7. 30	
2	金 貴 好	英	'	21 1. 22	
3	姜 泰 協	英	'	21 1. 22	
4	張 水 業	英	'	21 1. 22	
5	千 光 麟	英	'	22 1. 20	
6	朴 成 根	和	銃殺刑	22 2. 5	
7	趙 文 相	英	絞首刑	22 2. 25	
8	金 長 錄	英	'	22 2. 25	
9	朴 榮 福	英	'	22 2. 25	
10	金 沢 振	英	'	22 2. 25	
11	林 永 俊	英	'	22 6. 18	

12	樺	昌	善	和	統	22	9	5
13	朴	俊	植	和	'	22	9	5
14	卞	鍾	尹	和	'	22	9	5
15	洪	思	湖	米	'	22	9	20
16	車	鈞	福	中	'	22	5	3
17	白	天	瑞	中	'	21	9	12
18	金	奎	彦	中	'	22	1	9
19	朴	享	俊	中	'	22	6	12
20	趙	充	台	中	'	22	3	23
21	庚	三	千	中	'	22	2	4
22	金	子	一	中	'	22	1	上旬
23	柳	川	廣	中	'	22	5	25

在 日 者

	氏 名	裁判国	刑期	逮捕年月日	出所年月日	在監年月日	備 考
1	李 大 興	和	10	21 2. 18	26. 5. 3	5. 2. 16	
2	李 鶴 來	濠	20	20. 9. 29	31 10. 6	11 0. 8	
3	李 鳳 極	和	15	21. 6. 3	28. 7. 30	7. 1. 28	
4	丁 奎 文	英	5	21 6. 6	25. 3. 12	3. 9. 7	肺結核
5	高 在 閔	和	18	21 4. 13	29. 5. 28	8. 1. 16	
6	尹 東 鉉	和	20	21 4. 13	31 1. 6	9. 8. 24	
7	金 景 淳	和	5	21 4. 15	25. 3. 18	3. 11. 4	
8	朴 允 商	和	15	21 4. 13	29. 3. 18	7. 11. 6	戰傷病
9	鄭 殷 錫	英	15	21 2. 4	31. 2. 6	10. 0. 3	
10	金 完 根	英	10	20. 11. 11	27. 3. 6	6. 3. 26	
11	趙 濟	和	15	21 6. 3	27. 4. 18	5. 10. 16	

12	金	祥	龍	英	終身	21	2	4	31	2	3	10	0	0
13	李	億	萬	和	8	21	6	3	25	9	12	4	3	10
14	金	鍾	淵	源	12	20	9	16	27	3	6	6	5	21
15	李	善	根	和	12	21	5	15	27	1	22	5	8	8
16	朴	昌	浩	和	15	21	4	9	30	1	8	8	9	0
17	鄭	春	吉	英	12	20	9	24	27	4	11	6	6	17
18	洪	鍾	默	英	終身	20	9	29	30	9	27	9	11	9
19	文	泰	福	英	10	20	9	29	27	4	8	6	6	10
20	崔	榮	模	和	12	21	6	3	27	2	19	5	8	17
21	金	昌	植	源	終身	20	9	29	32	4	5	11	6	7
22	安	正	繁	和	18	21	2	18	31	1	6	9	10	16
23	趙	雲	國	英	15	20	9	28	31	3	17	10	5	20
24	車	駿	錫	英	終身	20	9	29	30	9	27	9	11	29
25	鄭	福	植	和	10	21	4	15	26	10	25	5	6	11

26	崔	鍾	麟	英	終身	20	9	29	30	9	29	10	0	1
27	崔	元	游	米	10	20	9	18	24	12	4	6	2	17
28	韓	允	哲	英	15	20	10	10	31	8	15	10	9	26
29	裴	訓	万	英	6	21	12	13	25	10	12	3	10	0
30	丁	永	玉	和	8	21	4	15	26	4	26	4	0	2
31	文	濟	行	和	8	21	2	18	26	8	8	5	5	21
32	閔	鶴	基	和	8	21	2	18	26	2	17	5	0	0
33	李	義	吉	英	終身	20	11	7	30	11	6	10	0	0
34	崔	普	燁	和	15	21	2	18	27	4	15	6	1	28
35	姜	大	述	和	7	21	4	15	25	10	30	4	6	16
36	梁	承	烈	和	15	21	6	3	28	7	30	7	1	28
37	金	雲	永	和	15	20	11	9	27	4	28	6	5	20
38	金	輔	濬	和	18	21	3	29	28	7	30	7	4	2
39	李	桓	康	和	9	21	4	15	26	7	20	5	3	6

肺結核入院中

40	金	基	永	英	10	21	2	4	27	4	15	6	10	3	
41	朴	江	敬	濂	15	20	10	3	31	8	15	10	8	3	
42	俞	東	祚	英	10	21	2	6	27	1	7	5	11	2	肺結核
43	韓	昌	範	和	10	21	6	3	27	1	10	5	7	8	
44	金	奉	鎮	英	5	20	9	10	25	5	6	4	7	27	
45	具	炳	祚	和	7	21	4	15	25	8	31	4	4	17	
46	田	泰	範	和	15	21	4	9	29	5	28	8	1	20	
47	朴	敬	錫	和	6	20	8	20	25	6	9	4	9	20	
48	金	東	海	和	10	21	2	16	26	8	8	5	5	23	
49	丁	瓊	鎮	和	10	21	4	15	27	2	14	5	10	0	
50	具	在	浩	英	6	20	9	10	25	3	7	4	5	28	肺結核
51	金	在	俊	和	5	21	4	9	25	3	31	3	11	23	肺結核
52	朴	泰	賦	英	10	21	2	6	26	11	9	5	9	4	精神異常入院中
53	李	昌	白	和	10	21	4	15	26	11	2	5	6	18	

54	崔	南	國	和	5	21	4	9	25	3	22	3	11	14	29.11.13病死
55	朴	貞	根	濂	20	21	2	16	31	10	6	10	7	21	36.8.16病死
56	梁	月	星	和	14	21	4	1	26	10	2	5	6	2	30.10.20自殺
57	許		榮	英	10	21	2	6	26	12	15	5	10	10	30.7.19自殺
		計										390	9	9	

帰 国 者

	氏 名	裁判国	刑期	逮捕年月日	出所年月日	在監年月日	備 考
1	沢 善 兵衛	英	10	21 2 4	28 5 7	7 3 4	
2	根 海 梁	英	16	20 10 10	22 12 22	2 2 13	
3	珍 洙 甲	英	2	20 9 24	23 6 12	2 8 19	
4	淑 秉 朴	英	2	20 9 28	23 6 24	2 8 27	
5	鎮 錫 黄	英	3	21 2 6	23 6 24	2 4 19	
6	洙 宰 鄭	和	2.6	21 2 18	24 3 10	3 0 23	
7	沢 永 沈	英	3	21 6 10	24 3 12	2 9 3	
8	孝 根 洪	英	3	20 9 24	24 3 12	3 5 19	
9	玉 相 宋	英	3	21 2 6	24 3 12	3 1 7	
10	行 壽 趙	英	10	20 9 10	23 7 10	2 10 1	
11	錫 孟 李	英	3	20 9 24	24 3 12	3 5 19	

12	閻	鴻	蓋	英	5	20	9	28	24	4	14	3	6	17
13	金	漢	權	英	終身	21	2	6	25	4	30	4	2	25
14	李	經	丸	和	3	21	4	13	24	5	10	3	0	28
15	金	大	華	和	3	21	6	3	24	5	10	2	11	8
16	崔	成	教	英	6	20	9	28	25	9	25	4	11	8
17	朴	丙	贖	和	2	21	6	3	25	2	17	3	8	15
18	李	權	宰	和	3	21	6	3	25	2	17	3	8	15
19	李	永	換	和	3	21	4	9	25	2	17	3	10	9
20	金	玉	劍	和	3	21	4	13	25	2	17	3	10	5
21	鄭	換	圭	和	5	21	2	18	25	2	17	4	0	0
22	金	斗	三	和	4	21	6	3	25	2	17	3	8	15
23	申	明	休	和	5	21	2	18	25	3	3	4	0	17
24	李	義	度	和	5	21	4	15	25	3	18	3	11	4
25	柳	夏	淵	和	5	21	4	15	25	3	18	3	11	11

26	趙	傅	蘇	和	6	20	8	20	25	6	9	4	12	20
27	李	長	易	和	6	21	4	15	25	6	26	4	2	12
28	金	孟	右	和	6	21	4	15	25	7	26	4	3	12
29	鄭	鍾	觀	和	5	21	6	3	25	8	25	4	2	23
30	趙	泰	元	和	7	21	4	15	25	9	8	4	4	24
31	金	敦	巨	和	7	21	4	15	25	9	8	4	4	24
32	李	殷	兩	英	7	21	1	10	25	5	25	4	4	16
33	吳	完	根	和	8	20	8	20	26	3	26	5	7	7
34	宋	布	烈	英	7	21	2	6	26	7	16	5	5	11
35	金	寬	濟	英	7	21	2	6	26	7	16	5	5	11
36	金	根	植	英	6	20	9	28	26	9	1	6	0	4
37	金	基	同	和	10	21	3	18	26	9	21	5	6	3
38	朴	榮	來	和	10	21	6	3	26	9	21	5	3	19
39	盧	在	永	和	10	21	2	18	26	11	2	5	9	5

40	白	張	錫	英	10	20	9	24	27	1	7	6	3	14
41	金	張	錫	和	12	21	2	18	27	2	19	6	0	2
42	金	遠	直	和	12	21	4	15	27	3	3	5	10	19
43	金	容	判	英	10	20	9	29	27	3	24	6	5	26
44	崔	柱	浩	英	10	20	9	24	27	4	11	6	6	18
45	金	昌	禧	和	15	20	11	15	31	1	6	10	1	22
46	朴	鍾	介	英	15	20	9	28	31	8	15	10	10	18
47	朴	鍾	泳	英	15	20	9	28	30	9	27	10	0	0
48	金		鍾	英	終身	20	9	29	30	9	28	10	0	0
49	羅	三	祚	英	終身	21	2	4	31	2	3	10	0	0
50	洪	起	聖	英	終身	20	9	18	30	9	23	10	0	0
51	金	哲	基	和	6	21	4	13	25	9	12	4	5	0
52	周	會	元	和	6	20	8	20	25	11	15	5	2	26
53	盧	在	明	和	8	21	4	15	26	4	26	5	0	12

54	龐	鍾	石	和	8	21	4	15	26	5	3	5	0	19
55	朴	鍾	真	和	8	21	4	15	26	5	3	5	0	19
56	曹	壽	鉉	英	10	20	9	29	28	3	28	7	6	0
57	朴	泰	錫	和	11.6	21	4	9	26	12	12	5	8	4
58	崔	大	禧	和	12	21	4	15	27	3	24	5	11	10
59	金	熙	晉	英	10	21	6	3	27	3	27	5	9	25
60	宋	甲	進	米	10	21	1	6	27	2	4	6	0	29
61	徐	万	杰	中	終身	20	8	20	27	8	5	6	11	16
62	張	仁	國	中	終身	20	8	20	27	8	5	6	11	16
63	李	炳	董	中	12	20	8	20	27	8	5	6	11	16
64	金	英	家	中	12	20	8	20	27	8	5	6	11	16
65	張	錫	家	中	10	20	8	20	27	8	5	6	11	16
66	崔	秉	斗	中	7	20	8	20	27	8	5	6	11	16
67	鄭	南	浩	中	7	20	8	20	27	8	5	6	11	16

68	養	張	鹿	中	5	20	8	20	27	8	5	6	11	16
												363	0	21